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7
----------	-----

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회부
-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감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 우리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감염병 대비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감

염병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감염병 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센터개요

- 명칭 :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
- 설치 및 운영장소 : 공모로 선정
- 구성
 - 인원 : 센터장 포함 5~7명
 - 자격요건 : 감염병 관련 역학 또는 임상의학 전공자,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지식 소유자 등
 - 기타 센터 내 외부전문가 자문기구인 지원단(보건소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시립병원 관계자, 감염병 전공 교수 등 10명 내외) 설치
- 설치예정 시기 : 2012. 9월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2. 9 ~ 2014. 9)
- 위탁업무
 -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단발생 대응 자문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감염병 관리 능력 향상
 - 감염병 관리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 결핵관리 업무 지원
 - 기타 감염병 연구 및 매뉴얼 개발 등

- 소요예산 : 519,950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 태 호)

가. 위탁의 근거

- 본 동의안의 위탁대상사무는 금년 9월 설치예정인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운영사무임.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설치계획 중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음.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인지 여부

-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는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단발생 대응 자문’,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감염병 관리능력 향상’,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결핵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들 사업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봄.
-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대상사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위의 나열된 사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

무로써, 이들 사무를 행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공무원에 비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및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수 있다는 점이고,

- 다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 및 연구자의 의견을 감염병 관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학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임.

○ 이를 종합하면 새로운 감염요인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는 등 민간 전문가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하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47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감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 나. 우리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감염병 대비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감염병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감염병 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명칭 :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
- 설치 및 운영장소 : 공모로 선정
- 구성
 - 인원 : 센터장 포함 5~7명
 - 자격요건 : 감염병 관련 역학 또는 임상의학 전공자,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지식 소유자 등
 - 기타 센터 내 외부전문가 자문기구인 지원단(보건소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시립병원 관계자, 감염병 전공 교수 등 10명 내외) 설치
- 설치예정 시기 : 2012. 9월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2. 9 ~ 2014. 9)
- 위탁업무
 -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단발생 대응 자문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감염병 관리 능력 향상
 - 감염병 관리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 결핵관리 업무 지원
 - 기타 감염병 연구 및 매뉴얼 개발 등
- 소요예산 : 519,950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신규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활발한 국제 교류와 과밀화된 인구 등 우리시만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감염병 정책 수립과 분야별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국제적 안목과 전국적, 지역적 특성을 골고루 인지하고 있는 감염병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